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06,464,257	30,193,928
일반회계	831,096,246	24,932,887
특별회계	175,368,011	5,261,040
공기업특별회계	148,957,706	4,468,731
상수도사업	72,403,457	2,172,104
하수도사업	76,554,249	2,296,627
기타특별회계	26,410,305	792,309
주택사업 특별회계	3,400,476	102,014
교통사업 특별회계	17,694,288	530,8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81,772	35,453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692,296	80,769
폐기물유발부담금 특별회계	8,875	266
대지보상 특별회계	531,935	15,958
기반시설 특별회계	260,146	7,804
수질개선 특별회계	640,517	19,21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919,591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